

##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2. 6. 14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2. 6. 1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9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2. 6. 20)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가. 주 문

○ 부천시와 미국 GBT사·CH2M HILL사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외자유치하기 위하여 체결한 2000. 10. 4 계약서와 2002. 5. 30 계약서(안)을 의회에 인준을 받고자 함

나. 제안이유

1)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를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미국 GBT 및 CH2M HILL사의 선진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B·O·T방식으로 최첨단 환경기초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 10. 4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02. 5. 30일 계약서(안)를 합의하였음

2)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국내 최초로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선진기술과 자본을 유치, 최첨단 환경기초시설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계약서 제10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인준을 받고자 함

다. 주요골자

1) 사업개요

○ 위 차 :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07번지 일원(폐기물종합처리장 내)

○ 부지면적

· 지상 6,353㎡(1.57에이커 1,922평)

· 지하 20,234㎡(5에이커 6,121평)

○ 시설규모 : 800톤/일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 공사기간 : 2002. 6~2004. 12월

○ 소요예산 : 5,000만 불(한화 약 600억원)

2) 2000. 10. 4 계약서 주요내용

○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 일일 800톤 처리

○ 이행, 완성보증보험 국제신용등급 우량보험 보증서 제출

○ 시설완공 시점으로부터 25년 후 기부채납

○ 시의회 승인일로부터 24개월 내에 완결

- 부천시의 책임없는 사유로 3년 이상 가동 중단시 철거 및 원상복구
- 기술이전 조건 삽입
- 처리비용은 실시설계 완료 후 총 투자비와 수익률을 고려하여 조정
- 인센티브와 이익은 일부 시·군의 음식물쓰레기 반입시 제협의
- 부천시의회 인준을 받아 시행
- 운영초기 효율적인 운영과 처리단가 절감 위해 활용방안 협의
- Pilot Plant 건설하여 기술검증

3) 2002. 5. 30 계약서(안) 주요내용

-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20년을 예측하여 처리용량을 결정하여 건설
- GBT Pilot Plant 5톤/일 건설운영은 제3의 기관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기술성 및 환경성에 대한 공동검증을 실시한 후 성공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본 공사를 착공하며, 검증실패시 원상복구 후 사업전면 철수
- GBT는 부천시의 향후 20년을 예측하여 산정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2026년 : 350톤/일) 및 하수슬러지 발생량(2010년도 105만 톤 하수처리장 건설 후, 부천시 인근 경기도 일부 시·군의 음식물쓰레기를 한시적(5년한)으로 처리해 줄 수 있다.
- GBT사는 하수슬러지를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며 이에 모든 책임을 진다.
- 처리용량이 조정되었을 경우 인센티브 추후 재협의
- 반입료는 각각 미화\$40 내외로 하되, 본 플랜트의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총 투자비와 수익률을 고려한 후 재협의하여 조정·확정하며, 2년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조정
- 하수슬러지는 슬러지 케이크형태로 GBT처리장에 반입하며, GBT는 이를 소각하지 않고 최종 처리까지 전량 처리하는데 모든 책임을 진다.
- 최종 하수슬러지 처리비는 폐수처리부담금과 폐수처리비를 합하여 산정된 하수슬러지 처리비와 상계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플랜트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부천시와 GBT 간에 별도 조정하여 결정한다.
-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처리비를 지급하기 위한 화폐단위는 대한민국 화폐로 한다.
- 양측의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시 결정한 화폐단위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pm 5\%$  이상의 환율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처리비를 재조정한다.
- 계약서(안)과 2000. 10. 4일자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가 결정한다. 추후 이를 시의회에 보고한다.
- 2000. 10. 4일 체결한 계약서와 2002. 5. 30일 체결한 계약서(안)과 상충되는 부분은 본 계약서(안)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2000. 10. 4일 체결한 계약서에 따른다.

라.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호 및 제7호

- 2000. 10. 4 계약서 제10조제1항

2) 붙 입

- 계약서 대비표 1부
- 2000. 10. 4 계약서 1부
- 2002. 5. 30 계약서(안) 1부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화 시설의 정확한 위치는?</li> <li>○ 소각장 건설시 대장동 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체육시설로 축구장을 만들어 제공한 부지에 자원화 시설을 만들 경우 주민반발이 예상되므로 다른 부지를 찾아 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li> <li>○ 현재 1일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발생량은?</li> <li>○ 총 발생량이 260톤 정도인데 800톤 처리 시설은 규모가 크다고 보는데?</li> <li>○ 400톤 규모면 충분하다고 판단됨. 10년 후를 생각해서 미리 800톤 규모로 시설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고 할 수 없음. 시의 입장보다 GBT사의 입장만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li> <li>○ 계약 수정시 국제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나?</li> <li>○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가?</li> <li>○ 2,000톤 처리시설로 할 경우는 처리비용을 지불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정구 대장동 607번지 일원이었으나 지번 합병으로 현재는 608번지이며, 약 40,000 평임</li> <li>○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음</li> <li>○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20톤 정도로 보고 있으며, 수거량은 약 80톤 정도 되며, 하수슬러지는 180톤 정도 발생함</li> <li>○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2011년에는 약 535톤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800톤 처리 시설로 하는 것임</li> <li>○ 향후 하수슬러지의 증가를 예상해서 시설코자 하는 것임</li> <li>○ 자문을 받은 상태임</li> <li>○ 처리비용을 내도록 되어 있음</li> <li>○ 40톤만 무료임</li> </ul>

- 계약서 체결시 필히 하수슬러지 탈수케이크 함수율은 78%로 명시하기 바람
- 시험운영을 해보고 계약체결 해야 한다고 보는데?

- 명시하겠음
- GBT사는 계약체결이 되어야 시설비용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빨리 해야 되며, 파일럿 플랜트 5톤시설을 먼저 하고 우리 측 기술자의 검증을 받아 전부 시설할 것임. 검증을 못 받을 경우 처리시설을 포기하도록 하였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10년내 지 20년 후를 대비하는 시설로 건설하여 예산낭비 하지 말고 현재 1일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량과 하수슬러지량을 참고하여 처리시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검토
- 대장동 주민에게 제공된 체육시설은 주민을 위해 보존
- 계약서에 필히 하수슬러지 탈수케이크 함수량을 78%로 명시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

의안번호	제597호
의결년월일	2002. 6. 21 (제96회)

제출년월일 : 2002. 6. 1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1 주 문

- 부천시와 미국 GBT사·CH2M HILL사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외자유치하기 위하여 체결한 2000. 10. 4 계약서와 2002. 5. 30 계약서(안)을 의회에 인준을 받고자 함

2 제안이유

- 1)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를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미

국 GBT 및 CH2M HILL사의 선진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B.O.T방식으로 최첨단 환경기초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 10. 4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02. 5. 30일 계약서(안)를 합의하였음

- 2)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국내 최초로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선진 기술과 자본을 유치, 최첨단 환경기초시설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계약서 제10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인준을 받고자 함

### 3 주요골자

#### 1) 사업개요

- 위치 :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07번지 일원(폐기물종합처리장 내)
- 부지면적
  - 지상 6,353m<sup>2</sup>(1.57에이커 1,922평)
  - 지하 20,234m<sup>2</sup>(5에이커 6,121평)
- 시설규모 : 800톤/일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 공사기간 : 2002. 6~2004. 12월
- 소요예산 : 5,000만 불(한화 약 600억원)

#### 2) 2000. 10. 4 계약서 주요내용

-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 일일 800톤 처리
- 이행, 완성보증보험 국제신용등급 우량보험 보증서 제출
- 시설완공 시점으로부터 25년 후 기부채납
- 시의회 승인일로부터 24개월 내에 완결
- 부천시의 책임없는 사유로 3년 이상 가동 중단시 철거 및 원상복구
- 기술이전 조건 삽입
- 처리비용은 실시설계 완료 후 총 투자비와 수익률을 고려하여 조정
- 인센티브와 이익은 일부 시·군의 음식물쓰레기 반입시 재협의를
- 부천시의회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
- 운영초기 효율적인 운영과 처리단가 절감 위해 활용방안 협의
- Pilot Plant 건설하여 기술검증

#### 3) 2002. 5. 30 계약서(안) 주요내용

-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20년을 예측하여 처리용량을 결정하여 건설
- GBT Pilot Plant 5톤/일 건설운영은 제3의 기관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기술성 및 환경성에 대한 공동검증을 실시한 후 성공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본 공사를 착공하며, 검증실패시 원상복구 후 사업진면 철수
- GBT는 부천시의 향후 20년을 예측하여 산정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2026년 : 350톤/일) 및 하수슬러지 발생량(2010년도 105만 톤 하수처리장 건설 후, 부천시 인근 경기도 일부 시·군의 음식물쓰레기를 한시적(5년한)으로 처리해 줄 수 있다.

- GBT사는 하수슬러지를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며 이에 모든 책임을 진다.
- 처리물량이 조정되었을 경우 인센티브 추후 재협의
- 반입료는 각각 미화 \$40 내외로 하되, 본 플랜트의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총 투자비와 수익률을 고려한 후 재협의하여 조정·확정하며, 2년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조정
- 하수슬러지는 슬러지 케이크형태로 GBT처리장에 반입하며, GBT는 이를 소각하지 않고 최종처리까지 전량 처리하는데 모든 책임을 진다.
- 최종 하수슬러지 처리비는 폐수처리부담금과 폐수처리비를 합하여 산정된 하수슬러지 처리비와 상계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플랜트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부천시와 GBT 간에 별도 조정하여 결정한다.
-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처리비를 지급하기 위한 화폐단위는 대한민국 화폐로 한다.
- 양측의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시 결정한 화폐단위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pm 5\%$  이상의 환율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처리비를 재조정한다.
- 계약서(안)과 2000. 10. 4일자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가 결정한다. 추후 이를 시의회에 보고한다.
- 2000. 10. 4일 체결한 계약서와 2002. 5. 30일 체결한 계약서(안)과 상충되는 부분은 본 계약서(안)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2000. 10. 4일 체결한 계약서에 따른다

4.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호 및 제7호
- 2000. 10. 4 계약서 제10조제1항

2) 불 입

- 계약서 대비표 1부
- 2000. 10. 4 계약서 1부
- 2002. 5. 30 계약서(안) 1부

□ 불입1 : 계약서 대비표

조 항	2000. 10. 4 계약서		2002. 5. 30 계약서(안)
	당 초 안	수 정 안	
제1조 제1항	• 일일 2000톤 이상의 젓은 쓰레기를 처리	•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를 합하여 일일 총 800톤을 처리	• 향후 20년을 예측하여 처리용량 결정

제1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행, 완성보증보험을 국제적 신용등급 최우량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획득하여 부천시에 제출하여 독자적으로 책임진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행, 완성보증보험을 부천시가 동의하는 국제적 신용등급 우량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획득하여 부천시에 제출하며, 독자적으로 책임진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승계</li> </ul>
제4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에 따른 건설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내에 완결하여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에 따른 시설의 건설은 시의회 승인일로부터 24개월 내에 완결하여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승계</li> </ul>
제4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만, GBT는 후자의 철거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여자 치단체(제10, 2조에 정의됨)가 부담하는 쓰레기처리비에 한시적으로 그 비용을 가산 징수하며, GBT는 위 징수된 비용을 부천시가 지칭하는 부천시 명의 예금구좌에 매월 이월 송금한다. 위 구좌에 예치된 금액(원리금)은 위와 같은 폐쇄 및 철거사유 발생시 사용하며, 계약기간 완료시에는 부천시에 귀속된다. 위와 같은 가산비용 및 기간은 세부 협약서에서 정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상 설계한 의도만큼 처리를 못할 경우나 설계에 의도한 만큼의 성능에 못 미치거나 또는 GBT가 이진 계약 또는 이진 계약 관련 보충계약의 주요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부천시가 책임 없는 사유로 3년 이상 가동 중단시 GBT는 처리시설의 철거 및 폐쇄에 드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ilot Plant 검증실패로 확정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부지를 원상복구하고 사업을 전면 철수한다.</li> </ul>
제5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식물쓰레기 처리량에 따라 톤당 미화 34달러의 처리비용을 매달 총 처리량 보고를 받는 즉시 10일 안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가격은 부천시에 지급할(해야 할) 10%의 수수료 및 경기도에 제공할 US \$1의 환경자금이 포함되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은 세부실행협약에 정하되, 본 시설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총 투자비와 수익률을 고려하여 재협의하여 조정·확정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입료는 각각 미화 40\$ 내외로 하되 본 플랜트의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총 투자비와 수익률을 고려한 후 재협의하여 조정·확정한다.</li> </ul>

<p>제5조 제3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은 매 3년마다 조정하며 (이후 CPI Adjustment라 칭함) 톤당 가격은 매 3년마다 본 계약 체결일에 조정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톤당 처리비는 매 2년마다(이후 CPI Adjustment이라 칭함) 계약 체결일에 조정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리단가는 계약서 5·3호에 따라 2년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조정한다.</li> </ul>
<p>제6조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BT는 부천시에 제공해야 할 적절한 Incentives와 Benefits에 관하여 협의를 하기 위하여 선의를 다하여 협상하여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centives와 Benefits는 시설을 건설한 후 부천시의 물량을 처리하고도 유희용량이 발생하여 부천시 인근 경기도 일부 시·군의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었을 경우 제협의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센티브는 철회하되 1·4항에 따라 처리물량이 조정되었을 경우, 인센티브는 추후 제협의 한다.</li> </ul>
<p>제10조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는 경기도 내 시·군 및 서울시, 인천시(참여자치단체)로부터 확인된 일일 평균 1,000톤을 초과하는 반입동의 공식문서를 받아 GBT에 제출한다. 그 외에도 경기도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일 평균 1,500톤을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공식 문서를 제출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6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삭제</li> </ul>	
<p>제10조 제3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천시는 경기도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국·도비로 지원받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IC로부터 쓰레기처리 시설 입구까지 젖은 쓰레기 운반에 필요한 전용도로를 건설한다. 이때 경기도는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환경부로부터 전용도로 건설예산 지원공문을 받아 GBT에 제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삭제</li> </ul>	

제10조 제4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천시는 시설의 운영초기에 유희용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처리 단가 절감 등 경제성을 위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세부실행협약에 정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희시설이 발생되었을 경우 시의회와 협의 후, 인근 시·군의 음식물쓰레기를 한시적(5년한)으로 처리해 줄 수 있다.</li> </ul>
제10조 제5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BT는 Pilot Plant를 건설하여 안정성, 환경성 및 기술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실행협약에 정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ilot Plant는 계약서 시의회 승인일로부터 3개월 내에 건설, 가동한다.</li> </ul>

□ 붙임2 : 2000. 10. 4 계약서

###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외자유치계약서

#### (전 문)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이하 "시")와 미국 Missouri주에 등록사무소가 소재하는 Global Biowaste Technology Inc.(이하 "GBT") (이하 "Parties")는 2000년 10월 4일자로 본 계약서에 합의한다. 시는 시 자체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내의 각 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및 폐기에 관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GBT는 젖은 쓰레기의 처리 및 폐기에 관한 시설의 디자인 및 개발건설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것을 약인으로 하여 Parties는 아래 조항의 명시된 조건에 합의한다.

#### 1. 젖은 쓰레기 처리 시설의 설계, 개발 및 건설

(Design, Development, Construction of Wet Waste Treatment Plant)

1.1 GBT와 CH2M HILL은 합작하여 이 계약서에 명시된 요구와 조건에 따라 시에서 제공하는 부지에 최소 일일 2,000톤 이상의 젖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폐쇄형 혐기성 젖은 쓰레기 처리시설을 적용하는 법과 규칙에 따라 설계하고 개발하며 건설한다. 젖은 쓰레기 처리시설은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부산물로 전기, 토지개량제 및 혼합비료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 (Amendment - 수정)

1.1 GBT와 CH2M HILL은 합작하여 이 계약서에 명시된 요구와 조건에 따라 시에서 제공하는 부지에 음식물쓰레기(부천시의 향후 20년 후 발생 예측량)와 하수슬러지를 합하여 일일 총 8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쇄형 혐기처리시설을 건설하되 추후 증량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폐쇄형 혐기성처리시설은 현행법과 규칙에 따라 설계하고 개발하며 건설한다. 젖은 쓰레기 처리시설은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부산물로 전기, 토지개량제 및 혼합비료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1.2 GBT는 젖은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 및 필요한 장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이 미화 5000만 불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독자적으로 책임을 진다.

GBT는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에 대한 이행, 완성 보증보험을 국제적 신용등급 최우량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획득하여 부천시에 제출하며, 독자적으로 책임진다.

(Amendment - 수정)

1.2 GBT는 젖은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 및 필요한 장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이 미화 5000만 불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독자적으로 책임을 진다.

GBT는 쓰레기 처리시설(제10.5조의 Pilot Plant 포함) 건설에 대한 이행, 완성 보증보험을 부천시가 동의하는 국제적 신용등급 우량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획득하여 부천시에 제출하며, 독자적으로 책임진다.

1.3 GBT는 자기부담으로 관계법규에 따라 부지 위에 필요한 건물, 주차장, 차도, 보행로 및 정원 등을 건설할 수가 있으며 그 외에도 쓰레기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위와 비슷하거나 또는 비슷하지 않은 건물 및 부대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4 4.3조항에 따라 기부채납 할 쓰레기 처리시설 및 시설의 일부로서 부지 위에 세워진 빌딩이나 건축물들 및 모든 개조, 증축, 개량물과 가구들 및 GBT나 어느 개인 또는 기타 법인이 부지 위에 제작하거나 설치한 가구와 영업집기들도 GBT의 재산이다.

2. 쓰레기 처리시설 운영(Operation of the Waste Treatment Plant)

GBT는 한국에 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회사를 설립한다.

GBT는 운영회사가 본 계약에 의하여 구축되도록 한다.

GBT와 운영회사는 GBT의 본 계약에 따른 의무에 연대책임을 진다.

3. 부지임대(Ground Lease)

부천시는 부천시 안에서 자유롭고 투명하며 사용 권리가 완전히 보장된 적어도 1.57 acres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와 적어도 계속된 5 acres 의 지하 부지를 Exhibit A에 첨부된 바와 같이 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을 위하여 GBT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하 "부지") 단, 부지에 추가로 필요할 경우 GBT는 GBT가 부천시에서 지정하는 부지에 새로운 온실을 짓는 조건하에 현재 계획된 온실 건설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GBT에게 제공할 부지에는 건물이나 건축물 등이 없어야 하며 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공공시설, 진입로 및 부수적 설비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GBT는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4. 임대 합의조건(Term of Agreement)

- 4.1 부천시는 부지에 관해 GBT에게 장기간의 임대를 하여 주어야 하며 그 기간은 쓰레기 처리시설이 완공되어 가동되는 시점으로부터 25년간에 한한다. 계약에 따른 건설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 내에 완결하여야 한다.

(Amendment - 수정)

- 4.1 부천시는 부지에 관해 GBT에게 장기간의 임대를 하여 주어야 하며 그 기간은 쓰레기 처리시설이 완공되어 가동되는 시점으로부터 25년간에 한한다. 계약에 따른 시설의 건설은 시의회 승인 일로부터 24개월 내에 완결하여야 한다.
- 4.2 계약 기간 중 만약 쓰레기 처리시설이 공정상 설계한 의도만큼 처리를 못할 경우나 설계에 의도한 만큼의 성능에 못 미치거나 또는 GBT가 이진 계약 또는 이진 계약 관련 보충계약의 주요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부천시가 책임 없는 사유로 3년 이상 가동 중단시, GBT는 처리시설의 철거 및 폐쇄에 드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GBT는 후자의 철거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여자치단체(제10.2조에 정의됨)가 부담하는 쓰레기 처리비에 한시적으로 그 비용을 가산 징수하며, GBT는 위 징수된 비용을 부천시가 지정하는 부천시 명의 예금구좌에 매월 이를 송금한다. 위 구좌에 예치된 금액(원리금)은 위와 같은 폐쇄 및 철거사유 발생시 사용하며, 계약기간 완료시에는 부천시에 귀속된다. 위와 같은 가산 비용 및 기간은 세부 협약서에서 정한다.

(Amendment - 수정)

- 4.2 계약 기간 중 만약 쓰레기 처리시설이 공정상 설계한 의도만큼 처리를 못할 경우나 설계에 의도한 만큼의 성능에 못 미치거나 또는 GBT가 이진 계약 또는 이진 계약 관련 보충계약의 주요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부천시가 책임 없는 사유로 3년 이상 가동 중단시, GBT는 처리시설의 철거 및 폐쇄에 드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 철거비용은 부천시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삭제)
- 4.3 GBT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모든 채무 및 의무에서 벗어나고 양호한 시설로 운영이 가능한 상태의 처리시설의 소유권을 쓰레기 처리시설 가동 및 운영에 관한 노하우(매뉴얼 포함)와 함께 시에 기증할 뿐만 아니라 젓은 쓰레기 처리시설에 관련된 모든 기술과 운영 편람 등을 시에 인계하여야 한다. 그후 만약 시에서 처리시설을 외부에 맡겨 계속 운영할 시에는 GBT에게 운영권에 대해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5. 가격 및 지급(Pricing & Payment)

- 5.1 쓰레기 처리시설의 준공에 따라 경기도에 반입동의 공식문서를 제출한 경기도 내 시·군, 서울시 및 인천시는 Section 5.2에 명시한 바와 같이 계산한 자신들의 젓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에 따라 톤당 미화 34달러의 처리비용을 매달 총 처리량 보고를 받는 즉시 10일 안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가격은 부천시에 지급함(해야 할) 10%의 수수료 및 경기도에 제공할 US\$1의 환경자금이 포함되

어 있다.

(Amendment - 수정)

- 5.1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은 세부실행협약에 정하되 본 시설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총 투자비와 수익률을 고려하여 재협의 하여 조정·확정한다.
- 5.2 하루 처리되는 쓰레기량은 매달에 반입된 총 무게(출입하는 운반트럭의 무게를 측정하여 결정함)를 그 달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GBT는 청구서와 함께 일별 쓰레기 반입량의 통수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해당 참여자치단체에 다음달 5일 전까지 제출한다.
- 5.3 가격은 매 3년마다 조정하며(이후 CPI Adjustment이라 칭함) 톤당 가격은 매 3년마다 본 계약 체결일에 조정한다.(이하 조정 일이라 칭함) 만일 한국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가 가동 개시일 3달 이전의 소비자물가지수(이하 "base period index"라 칭함)보다 상승되었을 경우 톤당 최저 가격을 인상한다. 가동 개시 일이라 함은 플랜트를 준공하고 처리사업을 시작한 첫번째 달로 한다. Base period index(한국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지수)는 당사자들이 매번 합의한 조정일 이전 3개월간의 지수와 비교하여야 한다. (이하 Comparison index라 칭함) 만일 Comparison index가 Base Period index에 비하여 증가되었을 경우 인상된 비율만큼 가격이 상승되어야 한다. 만일 참고할 지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또는 그 구성요인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들은 서로 합의를 하여 가격 결정에 참조할 유사한 지표를 정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 당사자들이 새로운 유사지표선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중재규정인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Amendment - 수정)

- 5.3 톤당 처리비는 매 2년마다(이후 CPI Adjustment 이라 칭함) 계약 체결일에 조정한다. (이하 조정 일이라 칭함) 만일 한국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가 가동 개시일 3달 이전의 소비자물가지수(이하 "base period index"라 칭함)보다 상승되었을 경우 톤당 최저가격을 인상한다. 가동 개시일이라 함은 플랜트를 준공하고 처리사업을 시작한 첫번째 달로 한다. Base period index(한국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지수)는 당사자들이 매번 합의한 조정일 이전 3개월간의 지수와 비교하여야 한다. (이하 Comparison index라 칭함) 만일 Comparison index가 Base Period index에 비하여 증가되었을 경우 인상된 비율만큼 가격이 상승되어야 한다. 만일 참고할 지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또는 그 구성요인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서로 합의를 하여 가격 결정에 참조할 유사한 지표를 정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 당사자들이 새로운 유사지표선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중재규정인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 5.4 GBT는 시 및 참가한 시와 군을 제외한 다른 계약자에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제한받지 않고 쓰레기 처리가격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최초 참가한 Participating Municipalities에게는 항상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6. 권리 및 인허가(Entitlements : Permits)

6.1 부천시는 GBT에게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 계획, 사양서, 건물, 인가, 검사, 면허 및 그 외 필요한 모든 정부의 인허가를 조속히 획득하는데 최대 지원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국외송금을 허용한다.

운영회사와 회사의 주요 투자자들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세금, 조세, 관세 및 법인세, 장비수입세, 부과금, 외국인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세, 상품 및 서비스 수입세, 기타 경기도, 시·군의 지방세, 부과금 등을 비롯한 세금, 조세 및 관세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6.2 GBT는 부천시에 제공해야 할 적절한 Incentives 와 Benefits에 관하여 협의를 하기 위하여 선의를 다하여 협상하여야 한다.

(Amendment - 수정)

6.2 GBT가 부천시에 제공해야 할 적절한 Incentives 와 Benefits는 시설을 건설한 후 부천시의 물량을 처리하고도 유희용량이 발생하여 부천시 인근 경기도 일부 시·군의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었을 경우 재협의를 한다.

7. 부수적인 사업(Ancillary Business)

GBT는 잉여전기, 토양개량제, 비료 또는 농산품 등을 포함한 플랜트의 부산물을 사용, 판매, 상업화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 자치단체에 한하여 처리시설의 부산물에 대한 선매권을 부여하며 구입량은 각자가 반입하는 쓰레기량에 비례하여 정한다.

8. 비밀보장(Confidentiality)

계약 당사자는 GBT의 기술, 처리공법 및 방법 등이 영업 비밀로서 전세계적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러한 지적소유권에 해당하는 정보에는 GBT의 기술, 처리과정 방법, 테스트방법, 테크닉, 연구, 개발, 사업계획, 마케팅 계획, 아이디어, 상품 컨셉, 그리고 재정상태 등이 포함되며 이외에도 유형물로서 비밀을 준수하여야 될 것들로는 서류, 서신, 장비, 노트북, 메모, 보고서, 파일, 샘플, 책, 서신왕래, 그 외의 서면 또는 그래픽 기록물 등(슬라이드, 도판, 원판, 비디오테이프, 오디오테이프, 그리고 컴퓨터레코드 등)이 포함된다

계약 당사자들은 이러한 대외비 자료들이 GBT의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들여서 개발한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이 자료들을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대외비로 유지하며 이 자료에 대한 제3자의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기로 합의한다.

단, 컨설턴트, 변호사, 관계기관(의회포함), 사업조언자들이 알아야 할 필요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9. GBT의 대표권 및 보증(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of GBT)

9.1 GBT는 GBT의 Board Director로부터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9.2 GBT는 젓은 쓰레기 처리시설의 디자인 및 개발을 위하여 Delaware주 주식회사인 CH2M HILL과

합작계약을 체결하였다. GBT와 합작회사는 젓은 쓰레기 처리시설을 디자인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9.3 GBT와 합작회사는 젓은 쓰레기 처리시설을 디자인 및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경제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

10. 부천시 대표권 및 보증(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of city)

10.1 부천시는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형성된 자치단체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 계약의 실제 적용은 부천시의회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수정)

10.2 경기도는 경기도 내 시·군 및 서울시, 인천시(참여자치단체)로부터 확인된 일일 평균 1,000톤을 초과하는 반입동의 공식문서를 받아 GBT에 제출한다. 그 외에도 경기도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일 평균 1,500톤을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공식문서를 제출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6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Amendment - 수정)

삭제

10.3 부천시는 경기도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국·도비로 지원받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IC로부터 쓰레기 처리시설 입구까지 젓은 쓰레기 운반에 필요한 전용도로를 건설한다. 이 때 경기도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환경부로부터 전용도로 건설예산 지원공문을 받아 GBT에 제출한다.

(Amendment - 수정)

삭제

(Add - 첨가)

10.4 부천시는 시설의 운영초기에 유희용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처리단가 절감 등 경제성을 위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세부실행협약에 정한다.

(Add - 첨가)

10.5 GBT는 pilot plant를 건설하여 안정성, 환경성 및 기술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실행협약에 정한다.

11. 중재(Arbitration)

이 협정서의 의미에 대해서 또는 계약당사자 중 어느 한 측(상기에서 언급한 대외비 조항에 의하여 구속된 인 포함)의 이행에 대하여 어떠한 분쟁이 생길 경우 이러한 분쟁은 세 명의 중재위원들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회부되고 조정되어야 하며 중재위원선정은 각 계약당사자가 한 명씩 선정하고 제3의 중재위원은 양쪽에서 선정된 두 명의 중재위원이 선정한다. 중재절차는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해서 서면통고를 한 후 45일 이내에 완결된다. 그러

한 통고가 있으면 양측은 각 1명의 중재인을 5일 이내에 선정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 중재규정이 적용된다. 만일 계약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중재위원회가 45일간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중재위원회 결정을 내린 시점이나 45일간의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5일 안에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의해 선정된 1인의 중립적인 중재위원에 의해 효력있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ICC 중재는 스위스 제네바나 계약당사자들이 상호 동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이 경우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규정이 적용된다. 중재위원회 또는 양측이 상호 합의한 제3의 장소에서 구속력 있는 중재가 처리되어야 한다. 중재 위원회 또는 중재 위원에 의하여 결정된 중재절차 승소자는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모든 중재비용을 보상받는다. 중재의 최종 결정일까지 플랜트는 계속해서 가동한다.

12. 수용(condemnation)

부천시는 본 계약 기간 중에 처리시설 및 부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13. 추가조치 이행합의(Agreement to Perform Necessary Act)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서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송달하는데 동의한다.

14. 추가서류(Further Documents)

계약 당사자들은 본 거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서류를 작성할 것을 합의한다. 여기에는 GBT의 플랜트 건설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서류, 본 계약 규정 제1조 내지 제7조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보충계약 및 본 계약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국제거래조건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포함되며 Section6.2에 제시된 시에 관계된 Incentives와 Benefits에 관한 서류도 포함된다.

15. 통고(Notice)

본 계약서가 요구하고 승인한 통고사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서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달되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직접 전달하거나 텔렉스 또는 팩시밀리를 통하여 전달한 시점.
- 2) 특급우편 서비스인 경우는 배달된 날짜
- 3) 우표가 첨부된 도착확인 왕복엽서를 첨부한 등기나 배달증명 우편 등으로 우송한 후 3업무일로 하며 주소는 다음과 같다.

To GBT : Mr. Jim Sheehan  
5977 Delmar Boulevard  
St. Louis Missouri 63132

With a copy to : David D. Kim, Esq.

David D. Kim & Associates  
3435 Wilshire Blvd. Suite 253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If to Puchon : Mayor Hye Young Won  
City of Puchon  
1156 Chong Dong , Wonmi District  
Puchon, Kyounggi - do, Korea

If to Kyounggi - do : Governor Chang Yuel Lim  
Kyounggi Provincial goverment  
3 - 1. Masan - ro, Kwonsun - gu  
Suwon, Kyyunggi - do, Korea

With a copy to : Andrew B Lee, Esq  
Lee & Hong  
221 N Figueroa Street  
Eleventh Floor  
Los Angeles, CA 90012

16. 양도(Assignment)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자기의 권리, 소유권, 이익을 양도할 수 없으며, 상대방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동의를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17. 계승자 및 수탁자(Successors and Assigns)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 및 당사자의 권리 계승자와 수탁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효력을 발생한다.

18. 추가조건 및 수정(Additional Terms Amendmets)

본 계약서는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는 국제상거래 조건을 포함한 공적으로 완벽한 계약서이다.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수정,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9. 준거법(Governing Low)

본 계약은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다만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가 적용되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공포된 규칙과 규제가 적용된다. 본 계약은 영문본을 우선으로 한다.

20. 집행(Enforcement)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또는 계약서의 조항에 대하여 의미나 해석 상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의무를 불이행한 당사자나 또는 분쟁에서 승소를 하지 못한 당사자는 상대

방이 지불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해야 한다. 여기에는 법정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도 포함된다.

## 21. 분리(Serverability)

만약 계약의 기간(Term), 계약조항(Covenant), 조건(Condition), 항목(Provision) 또는 특정개인 및 상황에 대한 본 계약의 적용이 무효 및 집행불능 판단을 받는 경우에도 무효 및 집행불능판단을 받지 않는 계약의 나머지 조항, 무효판결을 받지 않은 계약 당사자 및 상황은 영향받지 않으며 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 22. 계약서 부분

본 계약서는 양측의 확인 서명에 의하여 다수의 부분을 작성할 수 있다.

## 23. 면책(Indemnification)

GBT와 운영회사는 연대 또는 단독으로 다음 각 호의 GBT측 (GBT, 그 임원, 이사, 주주, 종업원, 대리인, 대표자, 계약자, 하청업체, 피초청인 등)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책임, 청구, 요구, 비용, 손실, 손해, 복구, 화해, 비용 등 불법행위나 신체상해로 인한 청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청구에도 해당됨. 또한 이자, 벌금, 변호사비용, 회계비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로부터 부천시 측(부천시, 그 선거직 및 임명직 간부, 직원, 대리인, 대표자 등)을 면책시킴과 동시에 부천시 측에 아무런 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손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공개되었는지 여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하며 직접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손해도 포함한다.

1. 부지상의 토양, 수질, 식물, 건물 및 건축물과 부지 및 플랜트상에 있거나 그에서 발생하거나 그에 영향을 주는 폐기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정의된 젖은 쓰레기뿐만 아니라 그밖의 쓰레기의 수송, 저장, 관리, 처리, 배출 또는 배출 위협과 관련된 처리, 운영
2. 그러한 폐기물 또는 GBT의 플랜트 운영, 관리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계된 부상(사망포함)또는 (동산 또는 부동산의)재산손해
3. 그러한 폐기물 또는 GBT의 플랜트 운영, 관리와 관계하여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소송, 성립된 화해 또는 정부 명령
4. 그러한 폐기물 또는 GBT의 쓰레기 처리 플랜트 운영, 관리와 관계된 법령, 명령, 규정, 요건 또는 정부당국의 요구사항, 또는 경기도 또는 부천시의 합리적인 정책의 위반(변호사 및 자문역 수입료, 조사연구비, 법정경비, 소송비용을 포함하거나 이에 한하지 않음)

본 면책규정은 본 계약의 해지 후에도 존속되며 GBT의 쓰레기 처리 플랜트 운영, 관리의 감독에 대한 경기도와 부천시의 부주의한 행위에 대한 배상도 포함한다.

본 계약서는 양당사자가 서명에 따라 상기 계약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천 시  
(CITY OF PUCHON)

업 회 인  
(WITNESS)

원 혜 영  
(Hye Young Won)  
부 천 시 장  
Mayor

방 비 석  
(Bee Seok Bang)  
경기도경제투자관리실장  
Assistant Governor  
Kyonggi Province

GLOBAL BIOWASTE TECHNOLOGY, INC.

WITNESS

Jim Sheehan  
Its President

Bill Calhoun  
Senior Vice President  
CH2M HILL

□ 붙임3 : 2002. 5. 30 계약서안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계약서안

본 계약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경기도 부천시(이하 "부천시")와 Global Biowaste Technology Inc.(이하 "GBT")가 2000년 10월 4일 체결한 계약의 후속조치로서 계약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계약서안을 체결한다.

이에 부천시와 GBT는 본 시설의 성공적인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1.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처리장 건설

1.1 GBT가 건설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20년을 예측하여 처리용량을 결정하여 건설한다.

1.2 GBT는 Pilot plant를 건설하여 운영하며 부천시와 시의회가 추천한 평가단과, GBT, CH2M HILL, 삼성엔지니어링 기술진 및 제3의 기관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기술성 및 환경성에 대한 공동검증을 실시한 후 성공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본 공사를 착공한다.

1.3 Pilot plant 검증이 성공적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GBT는 부천시의 향후 20년 음식물쓰레기 예상발생량(2026년 : 350톤/일) 및 하수슬러지 발생량(2010년도 105만 톤 하수처리장 건설 후 발생될 하수슬러지양: 450톤/일)을 고려하여 총 800톤 처리용량의 폐쇄형 혐기처리시설을 건설한다. 다만, 기술

적인 판단과 시설의 안전성 유지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은 추후 증량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1.4 부천시는 시설운영초기에 부천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도 유희용량이 발생되었을 경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처리단가의 절감 등 경제성을 고려하여 시의회와 협의 후, 부천시 인근 경기도 일부 시·군의 음식물쓰레기를 한시적(5년 한)으로 처리해 줄 수 있다.
- 1.5 GBT는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며 이에 모든 책임을 진다.

2.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

- 2.1 GBT사는 본 사업이 부천시의회의 인준을 받는 즉시 시설의 안전성과 환경성 및 기술성을 검증하기 위한 Pilot Plant를 부천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건설하여 운영한다.
- 2.2 부천시는 Pilot plant 설치 장소와 본 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를 제공한다. 양 시설의 건설비는 GBT가 전액부담하고 Pilot plant는 일일 5톤 규모의 처리시설로 건설한다. 이진 계약서에 대한 시의회 승인일로부터 3개월 내에 건설/가동한다.
- 2.3 Pilot Plant 시설의 성공유무 판단은 GBT가 제시한 성능 충족조건(별표)에 대하여 제1.2항에 명기된 평가단에 의하여 검증한 후 최종 판단한다.
- 2.4 만약, Pilot plant 검증결과 실패로 확정되었을 경우에 GBT는 지체없이 부지를 원상복구하고 사업을 전면 철수한다.

3. 인센티브

GBT가 부천시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인센티브는 철회하되, 1.4항에 따라 처리물량이 조정되었을 경우 인센티브는 추후 재협의한다.

4.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반입료

4.1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반입료는 월별 총 처리용량에 따라 현 외부위탁처리비, 소각처리비, 자체처리시설처리비(시설건설비 포함) 및 기존 혐기처리방식에 의한 처리비(시설건설비 포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처리비의 90% 내외 수준에서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반입료는 각각 미화 \$40 내외로 하되, 본 플랜트의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총 투자비와 수익률을 고려한 후 재협의하여 조정·확정한다.

4.2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는 계약 5.3조에 따라 2년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조정한다.

5. 폐수 및 하수슬러지 처리비

5.1 부천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처리하되, GBT 처리장에서 부천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유입수량과 수질은 별표와 같다.

5.2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기존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활용하여 1차 처리한 후,

슬러지 케이크 형태로 GBT 처리장에 반입하며, GBT는 이를 소각하지 않고 최종처리까지 전량 처리하는데 모든 책임을 진다.

5.3 최종 하수슬러지 처리비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후 발생하는 폐수처리부담금과 폐수처리비를 합하여 산정된 하수슬러지 처리비와 상계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플랜트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부천시와 GBT 간에 별도 조정하여 결정한다.

5.4 하수슬러지 처리단가는 계약 5.3조에 따라 2년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조정한다.

6. 처리비 지급 화폐 적용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처리비를 지급하기 위한 화폐단위는 대한민국 화폐로 한다.

7. 기타사항

7.1 부천시와 GBT는 급격한 환율변화에 따른 양측의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시 결정한 화폐단위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5% 이상의 환율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처리비를 재조정한다.

7.2 본 계약서(안) 또는 2000.10.4자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가 결정한다. 추후 이를 시의회에 보고한다.

7.3 2000. 10. 4 체결한 계약서와 2002. 5. 30 체결한 계약서안과 상충되는 부분은 본 계약서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2000. 10. 4 계약서에 따른다.

이에 양측은 상기와 같은 계약서안에 동의하고 서명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본 계약서안은 양 당사자가 서명함에 따라 영문 및 국문으로 각각 2부를 작성하고 상기 계약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2. 5. 30

부 천 시  
(CITY OF PUCHON)

GLOBAL BIOWASTE  
TECHNOLOGY, INC.

원 해 영  
(Hye Young Won)  
부 천 시 장  
Mayor

Jim Sheehan  
Its President